



위 조 공 문

수 신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대기오염방지시설(세정집진시설) 운영환경 관리기준 강화 및 환경 관리설비 지원사업 안내

귀 사업장의 간송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습식 세정집진시설(스크러버)의 운영환경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세정액 적정 관리 및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환경관리설비 설치 의무

세정집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 실시간 유해가스 멀티 분석기
2. 비례제어 전동 댐퍼 시스템

나. 환경관리설비 설치 지원사업

※ 세부 지원요건 및 환급기준은 붙임 1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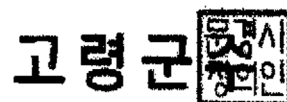
다. 지도·점검

관할 행정기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합니다.

- 환경관리설비 설치 여부
- 방지시설(스크러버) 정상 가동 및 세정수 적정 교체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행정처분 또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사업주 귀하

담당부서 : 환경과 대기관리팀 주무관 : 전상우 환경국장 : 삼원윤 전결 2026.07

전화번호 : 010-7782-2462 FAX : 054-950-6519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기야놀 뽕봉로 55

(붙임 1)

환경관리설비 설치 지원사업안내

정부는 법령개정에 따라 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스마트 환경관리설비 필수항목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주 전체

지원 품목 :

실시간 유해가스 멀티 분석기, 비례제어 전동 댐퍼 시스템

지원 규모 : 사업주 당 100,000,000원 한도 내 전액

가. 실시간 유해가스 멀티 분석기

- 복합 유해가스(성분별) 실시간 정밀 측정 및 멀티 모니터링
- 대기오염물질(가스상 물질) 농도 및 온도/습도 자동 측정
- 가동 상태 및 운영 정보 자동 저장 (IoT 시스템 연동)
- 대기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 및 설비 이상 발생 시 즉각 경보(알람) 기능

나. 비례제어 전동 댐퍼 시스템

- 유해가스 분석기 측정 데이터와 연동한 스마트 흡입 풍량 비례제어
- 가스 농도 및 내부 압력에 따른 전동 댐퍼 개도를(열림 정도) 자동 조절
- 고정밀 모터 구동을 통한 방지시설 유입 및 배출 풍량 최적화
- 에너지 절감(송풍기 동력 제어) 및 유지관리 운영 기록 기능

※ ※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 적용)

위반 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대기 환경관리설비 미설치	과태료 3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800만 원
환경관리설비 기록 누락/허위기재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취소 및 폐쇄

